

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68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14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노인환자의 증가와 의료비상승에 따른 65세이상 노인들의 진료시 경제적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보건진료소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65세이상 노인들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감면 신설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〈 근거법령 〉

- 노인복지법 제26조(경노우대) :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우대근거
- 지역보건법 제14조(수수료등)제2항
보건소에서 받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

4. 입법예고 : 결과 의견내용 없음

5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제5조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진료비 감면)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〈신설〉</p> <p><u>제4조(규칙) (생략)</u></p>	<p><u>제4조(진료비 감면) 보건진료소 진료환자중 65세이상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5조(규칙) (현행과 같음)</u></p>